

역사를 위하여: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

- 공공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

이 상 민*

1. 머리말
2. 역사연구와 기록의 관계
3. 기록과 아키비스트의 관계
4. 결론 : 역사가, 기록보존소, 아키비스트의 관계와 역할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역사 연구와 기록보존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온 사람들 이라하면 익히 알고 있는 기록보존과 역사학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대상은 주로 역사기록(또는 보존기록, 영어의 archives에 해

*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

주요논저: "New Dealers in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American Experiment in the Making of a National Economy", 『미국학논집』 제28집 2호; 「기록 관리학과 아키비스트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 제11호, 행정자치부 정부기록 보존소;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성립과 발전」 『미국사연구』 제10호, 미국사연구회

당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보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역사학자들이다. 역사학과 기록보존의 상호의존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아키비스트와 역사학자가 전문적인 직업적 통찰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는 역사 연구와 아키비스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하고 함께 토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하나의 문제 제기이자 그 동안에 있었던 기록보존 논의 중에서 역사 연구와 관련되는 직업적인 책무와 기능을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구를 활발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역사 기록의 선별과 보존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역사가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미래의 중요한 사료를 남기고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다. 당연히 국립기록보존소에 관한 관심도 소수의 몫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원인과 정치·사회·문화적 이유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원인을 논의하기보다는 역사연구와 기록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가와 아키비스트의 고유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역사 연구와 기록의 관계, 기록과 아키비스트의 관계, 기록보존소와 역사가의 관계, 아키비스트와 역사 연구의 관계이다.

이 상호 관계의 규명을 통해 필자는 역사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과거 사실의 규명 및 역사적 이해를 통해 인간에 대한 통찰을 획득하고 현대사회의 이해 및 미래에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고전적이고 일반론적인 답변 이외에 또 다른 두 가지 실제적 차원의 역할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역사가가 역사 사료의 선별과 보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비공개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여 역사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역사가는 한 나라의 역

사기록 보존제도의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당위로 제시되었지만 현재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기도 하다.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전문윤리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역사 연구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이러한 전문적 역할의 일부이다. 역사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답변은 “아키비스트는 역사 기록을 잘 선별, 보존, 정리하여 역사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역사 자체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전문 직업적인 이슈와 윤리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역사가와 공통으로 맡아야 할 부분과 각기 수행해야 할 역할이 확연하게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2. 역사연구와 기록의 관계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역사가는 기록을 통해 역사를 연구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기록이 없으면 의미 있는 역사 서술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기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기록보존 분야에서는 가치 평가(‘감정’)의 과제로 주어진다. 즉, 중요한 기록은 대체로 중요한 기록으로 선별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혹은 그 “중요함”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다양하거나 모호한 가운데 여전히 기록이 남겨지고, 그것이 남겨진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기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이 결정적인 과정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는다.¹⁾

1) 힐러리 젠킨슨은 그의 고전적 저서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의 여러 부분에서 역사가의 주관성으로 인해 보존기록을 공정하게 선별하여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대의 행정직에게 연구 기록의 선별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요 역사 기록의 선별과 결정은 주로 아키비스트의 몫이다. 역사가는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키비스트에게 영향을 준다. 현대 기록보존 제도가 성립되기 전의 기록으로서 사료로 인정받는 역사 기록은 시간이 지나가도 살아 남은 “시간에 의한 평가”를 거친 기록이며 우연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래에 남겨질 현대의 기록은 의도적인 선별 결정의 결과물이다. 지금 중요 역사기록을 선별하여 보존하지 않으면 후대의 역사 연구가 불가능해지거나 빈약해진다.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의 성격과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기록이 역사적으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 때 그 즉시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금 내려야 할 평가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연기하면 기록이 아예 보존되지 않게 되거나 그 만큼 고비용과 낭비를 초래한다.

아키비스트에 의해 선별되고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된 기록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사료적 측면에서 본 현대 역사학 연구의 특징이다. 고대사나 중세사의 연구는 대개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 드물고 이미 알려진 사료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수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근현대사의 연구는 낱알이 새롭게 발견되는 기록 자료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물리적으로 새로운 기록이 발견되는 경우 보다는, 물리적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거나 검색되지 않아서 이용되지 못하다가 새롭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사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 중의 하나는 “기록을 찾기”이다. 공공기록의 경우에는 정보자유법 혹은 정보공개법 제도를 이용하여 공개열람 요청을 통한 기록 찾기 방법과 이미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기록의 목록과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에 필요한 기록을 찾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해지고 후자는 주로 기록보

존소에서 수행된다.

한편 이러한 역사가의 기록찾기 과정은 역사 연구와 기록보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역사가는 순수한 호기심이나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역사 연구의 주제를 결정하고 질문을 제기한다. 학문적 호기심이든 현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든 간에 역사가는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기록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학문적 작업을 수행한다. 한정된 분량으로 출간된 사료집만 이용하거나 이미 남이 찾아 편찬한 기록만을 이용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안이하고 그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없다. 물론 기존 자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고 그동안 있어왔던 일이지만, 자신의 시각에서 새로운 자료를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찾아낸 새로운 자료가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역사서술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역사가가 기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으로 기록이 존재하게 되고, 기록이 존재하므로 역사가는 연구할 수 있게 된다. 기록은 이용되기 위해 기록보존소에서 보존되고, 정리되며, 그 이용을 기다리게 된다.

물론 역사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면 기록에 대한 수요도 빈약해진다. 당대의 역사 연구 수준이 빈약하면 후대에 남길 역사적 보존기록을 선별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 된다. 주로 무슨 기록이 역사연구에 필요한지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공공 기록 중에서 역사기록으로 보존될 기록을 선별하는 일은 주로 당대의 아키비스트들이 담당하는 일이다. 아키비스트들이 기록의 역사적 보존가치를 판단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역사 연구의 경험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역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연구의 경험이 있

다고 해서 기록의 가치 평가를 누구나 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문 역사 연구의 경험이 일천한 사람은 기록의 가치 평가를 수행할 기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다.

역사 연구의 관점과 맥락에서의 현재의 수많은 기록 중에서 영구보존 기록을 선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현재 역사학계의 역사 연구 수준이 기록물 가치 평가와 선별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미래에 어떠한 역사 연구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어떤 기록이 중요한 사료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 연구의 추세와 맥락은 존재하고 인지될 수 있다. 역사학의 어떤 연구 주제가 어떤 기록을 통해 연구되는지는 역사 연구의 개별적 경험과 연구공동체의 경험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키비스트 중에서 가치 평가 및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아키비스트의 지속적인 역사 연구 발표와 역사학회 학술활동의 참가는 단순한 권장사항 그 이상이다. 현대의 아키비스트들은 개별 기록을 개별적으로 가치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작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기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그 기능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역사적 보존가치를 평가한다. 이 때 역사 연구의 맥락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과학, 건축, 환경, 예술 분야 등 특수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의 역사 연구 경험을 쌓은 뒤에 기록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역사적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특수 분야 기록의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사 연구 경험이 공히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예: 과학사, 예술사, 건축사 등).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적어도 가치 평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역사

연구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아키비스트들에게 업무의 일정 시간을 역사 연구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는 지속적인 역사 연구를 통해 역사 연구의 맥락에서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제도인 것이다. 선진국에서 역사학 석사 이상의 전문연구자들이 아키비스트로 고용되는 것도 이러한 역사 연구 전문성이 기록물 평가·기술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록 관리 행정 업무는 보편적인 지식과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가치 평가나 기술은 해당 기능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역사 연구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아키비스트들이 전문적 역사 연구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지만 특수 전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특수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록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상적인 역사 연구를 통해 역사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에 후대의 연구자들이 사용할 사료를 결정한다. 즉, 현재의 역사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이해방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 연구 - 그 방향과 사료 - 를 결정한다. 그것은 현재의 역사 연구의 추세와 맥락에서 미래의 사료가 선별 보존되기 때문이다. 어찌 어찌해서 역사의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기존 기록의 연구만으로도 역사 연구는 가능하다. 만약 생존하고 있는 기록이 불충분하고 미비하다면 그 역사 역시 빈곤하고 부실한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원인과 학문적 자유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던 역사 기록이 부실하여 그동안 식민지시대와 해방 이후 시대의 역사 서술이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을 기본 사료로 하여 연구하는 조선시대사는 연구자의 능력만 있다면 그 어느 시기보다도 깊이 있고 풍부한 역사 서술이 가능할 것이

라고 본다. 이것은 오늘날 미래에 이용될 역사 자료가 현재 시점에 잘 선별되어서 제대로 남겨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역사 연구가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기록의 연속적 보호 관리(records continuum of care)는 행정의 개혁,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의 구현,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아키비스트와 역사가는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로지 미래 역사의 서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요 공공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관한 역사학계의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 공공 기록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아서 역사 연구가 부실해지는 경우를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일제시대의 연구자들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풍부하고 수준 높은 기록을 이용하기 어렵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일제시대의 연구 사료는 대부분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나 중심적인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아니다. 역사 기록물 가치의 평가에 따르면 중요하고 지위가 높은 핵심 부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사 기록이 더 많이 생산된다. 지배층이 생산한 사료를 사용하는 것과 지배층 중심의 역사를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배층의 사료를 이용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침탈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혼란 일이다. 사회사의 많은 주제가 정치와 종교 지배층의 자료에서 연구되고 있다. 구술사는 기록이 없는 민중의 역사 서술을 위한 보완 자료이다. 실록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되고 편집된 역사편찬 기록이었고 승정원일기는 왕명 출납과 보고 등 일상 업무 수행의 결과로서 생산되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역사기록이 된 공문서였다. 이 기록들은 당시 최고위층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알 수 있게 하는 “고급 자료”이다.

이러한 성격의 기록이 일제시대에도 생산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이란 기록 자체를 남기기 위해 생산되기보다는 당연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핵심 기록들을 역사가들이 찾아서 이용할 수 없을 때 제대로 된 식민지 시기 역사를 연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일본 정부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거나 호도하는 발언에 대해 그들이 남긴 사료에서 찾은 사실을 바탕으로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사를 단지 관점과 해석만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 경제 침탈이든 식민지시대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 최고위층의 정책 문서와 보고자료를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은 식민지시대 일제의 통치와 정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일천하고 그러한 핵심 기록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연구가 곤란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 역사기록의 결핍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의 시기에 특히 심각하다. 최근까지 국회도서관 및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현대사 기록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현대사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소장 기록은 최고위층의 정책 결정과정부터 남한내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나타내주는 고급 자료들이다. 우리가 생산한 기록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시대와 사건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현대사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록의 공개 여부를 여전히 생산자인 미국 측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²⁾ 물론 그 비공개 기록의 내역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미국이 한국 역사의 전개 방향에 끼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의 발달된 공공 기록물 생산과 보존체제로 인해 우리 현대사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우리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미국의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현대사의 서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한국사 자료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기록에 대한 역사 연구의 절대적 의존과 양자간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말해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정부수립 이후 정부 내에 역사적 보존가치를 갖는 중요 공공기록을 보존하려는 의식과 전문 행정관리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현대사를 연구하기 위해 서도 외국의 기록보존소에서 기록을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우려가 있다. 1969년에 와서야 설립된 정부기록보존소는 불행하게도 국가적 중요 사안과 고위 정책 결정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고급 기록을 많이 소장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1960~80년대 비민주적인 국가에서의 정부행정의 설명 책임 부재, 비투명성, 그리고 기록관리행정의 낙후성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독재로 왜곡된 한국현대사의 궤적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3. 기록과 아키비스트의 관계

기록보존소에서 보존기록을 수집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문가를 통상

-
- 2)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조사단의 기록은 한국전쟁 초기 당시 전황과 미군의 전반적인 전술전략을 잘 알려주는 자료로서 미국내 관련 각 부처에서 조사하여 수집한 핵심 자료군인데 NARA에서는 그 중 약 절반 정도인 15,000매 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아키비스트라고 부른다. 기록과 아키비스트와의 관계는 아키비스트의 직무에서 잘 나타난다. 기록보존소에서 아키비스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였다.³⁾ ICA의 『공공기관기록관리교육프로그램 학습교재』의 용어집에서는 단순히 “보존 기록 관리(archives management)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⁴⁾ 아메리카아키비스트협회(SAA)에서 발간한 용어집에서는 아키비스트란 “보존기록의 관리를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 훈련받고, 업무 경험이 있으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 즉 평가와 처리, 수집, 보존, 정리와 기술, 열람서비스, 기록관련 대외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⁵⁾ 한편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협의의 의미로 기록물관리자(records manager)라고 한다.⁶⁾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아키비스트의 전형적인 기능을 소개한다. 아키비스트는 크게 보아 기록물 생산관리, 기록물 보존관리, 기록물 열람공개의 3대 업무를 담당한다. 기록물 생산관리란 공공 업무의 현장에서 기록물 생산을 관리, 감독하고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기관에 이관하는

3) 영구보존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필자의 줄고 참조. 이상민, 「역사기록물의 항구적인 보존과 이용 : 보존전략과 디지털정보화」 『기록학연구』 창간호, 2000. 4.

4) ICA/IRMT, *Glossary*, (London, 1999) p.3. 이 용어집은 ICA의 핸드북 시리즈 중의 한 권인 Peter Walne이 편집한 *Dictionary of Archival Terminology* 제2판을 ICA 용어프로젝트 팀이 전면 개정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현행기록(records)과 보존기록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아키비스트는 records manager (기록관리자)와 구별되지 않는다. Eric Ketelaar, “Archivistic Research Saving the Profession,” *American Archivists* (63:2, Fall/Winter 2000) p.332.

5) Lewis J. Bellardo and Lynn Lady Bellardo,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2. pp.3-4.

6) 이상민, 「기록관리개론」, 『기록관리전문교육과정교재』, 정부기록보존소, 2001.

업무를 말하며 이는 활용기록물 및 반활용기록물을 관리도 포함한다. 기록물 보존관리 업무는 항구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식별, 보존, 정리, 열람 제공을 포함한다. 기록물 생산관리업무는 기본적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법적·행정적 책임의 완수를 지향한다. 역사기록 보존 업무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는 업무, 수집업무, 평가 업무, 정리·검색을 위한 기술업무, 그리고 보존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키비스트적 관점에서 보면 기록물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파악하여 등록시키고 선별하는 일이 중요하며 나아가 선별된 기록물의 보존 및 역사적 연구를 위한 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편 기록물 열람공개 업무는 수집 보존된 기록물의 공개여부 평가 및 기록물의 행정적·증빙적·역사적 활용을 위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공개를 시행하는 업무로서 보존기록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⁷⁾

아키비스트의 책무와 기능에 대해서는 ICA의 아키비스트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 가장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ICA 아키비스트 윤리 강령 중에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시한다. 윤리 강령 제1조에서는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을 완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그럼으로 해서 보존기록물이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키비스트의 전문가 정신을 기증하는 척도는 그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증거를 조작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려는 모든 압력에 아키비스트는 저항해야 한다”라는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직업적 가치를 제시한다. 제2조에서는 기록물의

7) 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 제11호,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1998. 2. 기록학과 아키비스트에 관한 논의에 다소 생소한 사람은 이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출처존중의 원칙과 전문적 평가와 정리의 의무를 제시한다.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이 가진 역사적, 법률적, 행정적 맥락에서 보존기록물을 평가, 선별, 보존해야 하며 그럼으로 해서 출처보존의 원칙을 지키고, 기록물 원래의 생산관계를 보존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3조에서는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을 가공, 보존, 열람 활용하는 과정 중에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제4조는 기록물의 정리, 선별, 평가에 있어서 우선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키비스트는 지속적으로 보존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생산하고 축적한 개인이나 기관의 활동을 핵심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보존할 기록물과 폐기할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야 할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이용하는]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5조는 보존기록의 처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제시한다. 제6조는 기록물의 최대한의 공개활용과 이를 위한 목록 작성을 권고한다.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이 최대한 공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이용자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전체 소장 기록물에 대해 일반 검색목록과 특정분야의 검색목록을 작성해야 한다”⁸⁾

무엇보다도 현대의 아키비스트는 보존할 기록을 선별한다. 물론 위에서 보았듯이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가치를 가지는 영구보존기록(영구문서)을 선별하는 일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키비스트는 보존할 기록을 반드시 선별해야 한다. 아키비스트와 기록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아키비스트의 보존기록 선별 기능이다. 보존기록은 기록의 생산자나 역사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

8) http://www.ica.org/biblio/c_ethics_e.html 번역 초판은 『기록보존』 제12호, 2001, 263~276쪽.

키비스트에 의해 주로 선별된다. 아키비스트는 심하게 말해서 기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다. 단, 아키비스트가 의견상으로 “전제적”으로 보이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보존기록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이기도 하다.⁹⁾

첫째, 영구 보존기록은 축적된 선별 경험과 기준에 의해 선별된다. 기록보존소라는 확립된 조직과 제도 안에서 아키비스트는 개별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고 의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그 기록보존소가 쌓아온 보존기록의 선별 경험과 합의된 기준에 의해 보존기록을 일단 선별하며, 일차적으로 선별한 목록을 교차 검토 방식이나 평가집단별로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별할 기록을 결정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러했다. 미국 NARA의 경우에는 6개의 평가팀(appraisal and scheduling work groups)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별로 기록물 가치를 평가한다.¹⁰⁾ 여기에서 “평가 및 보존기간분류 그룹”이라는 작업단의 명칭을

9) 기록물 가치 평가의 제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소개와 논의는 필자의 줄고를 참조하기 바람. 이상민, 「영구보존문서의 선별과 가치평가」 『기록보존』 제14호,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1. 12.

10) http://www.archives.gov/records_management/policy_and_guidance/work_groups.html
평가 보존기간 분류팀 (Appraisal and Scheduling Work Groups)에는 다음 6개 그룹이 있다.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oreign Relations, and Intelligence Work Grou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OP) and intelligence agencies), Military Work Group (military services agencies and Department of Energy), Domestic Work Group 1 (Departments of Transportation, Education, Veterans Affair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others), Domestic Work Group 2 (Departments of Justice, Treasury, judicial agencie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and others), Domestic Work Group 3 (Department of Commerce, legislative branch, EPA, NASA, FTC, U.S. Postal Service, some Department of Interior agencies, and others),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영구기록의 선별과 한시보존기록의 보존 기간 결정은 동일한 평가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NARA에서는 기관 그룹별로 평가 작업단이 배치되어 있어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현대 공공기록의 가치평가는 개별 아이템의 평가가 아니라 업무 기능(functions)의 평가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대개의 공공기록보존소는 기능별 혹은 기록 시리즈별 보존기간 책정제도(records scheduling)를 채택하고 있다. 생산기관의 기록관리자 혹은 기록생산자인 행정직과 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가 협의하여 결정한 업무 기능에 대해 기록보존소 아키비스트가 역사적 가치의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영구 보존기록을 선별한다. 이러한 제도는 평가자인 아키비스트가 개별적으로 자의적인 가치 평가를 수행할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셋째, 아키비스트는 불가피하게 역사 연구의 맥락과 추세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윤리강령에도 아키비스트는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사연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역사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아키비스트는 당대의 역사 연구의 수준과 추세에 영향을 받아 기록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 연구의 경험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아키비스트 자격 제도는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자의 수준과 자격을 최소한도로 보장한다. 서구의 아키비스트 자격제도나 기록학 석사 교육과정을 보면 역사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물론 기록물관리 전산화나 디지털화 추세에 의해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국가 중요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법령을 보면

Domestic Work Group 4 (Departments of Labor, Agriculture, some Department of Interior agencies, and others).

불과 수명의 가치 평가위원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서 생산하는 전산 자료의 보존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그 중에 역사 연구의 경험과 기록관리학 전문지식을 갖춰 국가전산자료의 역사적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역사적 가치평가 기준을 결정하고 그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의 기능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예전의 공문서보존기간표를 제정할 때 범했던 비역사적·물역사적 가치 판단의 오류를 전자 자료에 대해서도 그대로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넷째, 현대 아키비스트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기록 외적 요소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의 한도 내에서만 기록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은 아키비스트로 하여금 미래에 이용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기록을 폐기하도록 강요한다. 사실 아키비스트의 가치 평가 작업은 보존 역량과 경제성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모든 기록이 보존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는 결국 항상 차선으로서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대적인 평가가 되기 쉽다.

다섯째, 현대의 아키비스트는 행정 법규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 법규가 존재할 때에는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적시에 추진되어야 할 보존기록의 수집·정리라는 기본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정보기술의 발전은 고전적인 가치 평가 개념을 흔들어 놓았다. 사무 전산화는 기록생산의 자동화 및 대량화를 초래했다. 주로 종이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기록물을 하나 하나 그 정보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산자료 보존 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물리적 분량의 경제성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이용의 경제성과 정확성을 검토하게 만든다. 여기에 현대 행정기능의 다변화와 복잡화가 추가되어 평가 업무는 재래의 수동적인 방식으로부터 업무 기능에 따른 사전 자동분류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키비스트 개인의 역사적 관점과 가치 평가 기준이 평가에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하락시킨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키비스트는 여전히 기능별 가치 평가의 기준을 수립하고 기능별 가치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아키비스트는 여전히 보존기록을 선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다.

기록물의 가치평가작업에 역사적 시각이 결여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보다도 중요 역사 기록물의 소실이다.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드러났던 역사 기록물 선별 문제를 살펴본다. 1964년에 제정된 이래 정부공문서 중 영구문서를 선별하는데 사용되었던 '공문서 보존기간 및 책정기준'은 역사적 가치 평가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국 중요 기록의 멸실을 초래했다.¹¹⁾ 보존기간 책정기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부기록보존소 이경용 학예연구사가 조사한 영구문서의 잘못된 선별 사례를 들어본다. 아래 표를 보면 영구문서로 선별하여 역사기록으로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기

11) 기록물분류표 제도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이 문제는 여러 번 상세히 논의되었다. 필자가 기초한 『기록물분류표교육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 중에서도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각급 기관 문서실무자의 의견을 단순 집계한 것에 불과하며, 역사학 전문가에 의한 역사적 시각으로 영구보존 기록물을 책정하지 않아,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록물의 보존연한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예 : 주요 정책문서의 보존기간 10년)… 이에 따라 연간 수 만권의 중요 역사기록물이 유실 폐기되고 있다.” 이상민, 『기록물분류표제정교육안』 정부기록보존소, 1999. 1. 김태웅,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정과 전망」 『기록보존』제12호, 정부기록보존소, 1999, 159~173쪽.

록이 3~10년의 한시 보존문서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들은 결국 10년 이내에 폐기될 기록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결정에 따라 폐기되어 사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¹²⁾

<표 1> 공문서보존기간 및 책정기준의 사례

1차 분류	기능명칭 (2차분류)	세부기능 (3차분류)	기능종별(문서철)	보존기간
100 (總記)	127 文書保存		보존문서의 정리·관리에 대한 계획방침문서	3년
			보존문서기록대장	영구
			폐기문서에 관한 지침, 기타문서	1년
300 (경제 기획)	310 경제 종합계획	연차계획	계획서	10년
			장기계획	연구서
		경제심의	회의자료	1년
			장기대책	10년
			단기대책	5년
			작업결과보고서	3년
			기타일반적인 사항의 문서	1년
2000 (公安)	2062 政治情報		각정당 및 정치일반특수여론	3년
			개인동향	3년
	2065 문화계동향		문화시책 학생 및 교직원단체학원분과 각종종교동향 언론 예술 체육계의 동향 각종발간물등	3년

* 출처 : 총리령 제44호(1964년 4월 22일) '공문서보존기간 및 책정기준'

한편 1962년에는 대규모 '보존문서정리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경용은 "전문적으로 공문서의 보존을 담당하는 기구나 인력이 전무하다시피

12) 이경용, 「제4장 정부수립 이후 기록관리제도」,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 1894년-1969년』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피 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획일적인 적용에 의한 '과감한 폐기' 행위가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¹³⁾고 주장한다. 정부기록보존소 시귀선 학예연구관에 따르면 이 시기 기록물 폐기는 문서 생산부서의 사무관이 심사위원이 되어 수행하였고 선별기준은 행정적 참고 활용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역사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⁴⁾ 또한 1968년의 문서정리 '계획'과 '세부지침'에 의한 공문서 재분류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서들의 대량 폐기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의 사례는 기록과 아키비스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보존기록의 선별문제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결핍되어 있음으로 해서 역사기록이 보존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당대사의 중요한 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와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록 관리제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 역사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다.¹⁵⁾ 위와 같은 사례는 역사적 가치평가가 결여된 기록관리제도가 어떻게 중요 역사 기록의 멸실과 역사 연구의 부진을 초래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적 보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한시보존기간을 정하고 영구보존기록을 가능한 한 올바로 선별하기 위해 기록물분류기준표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시일 내에 완수되는 작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와 정보 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일선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13) 같은 글.

14) 시귀선, 「기록물관리법시행이전의 기록물 평가」, 『제1회기록물평가분류워크샵자료집』 정부기록보존소, 2001. 12. 14., 17쪽.

15) 이경용, 「제4장 정부수립 이후 기록관리제도」

기록관리자와 아키비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기록 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보존기간 분류표의 원형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 일단 원형을 제정한 연후에 기록물 생산 기능과 기록물 종류별로 정밀하게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기록과 아키비스트의 관계를 논의하자. 선별 업무 다음으로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보존한다. 영구보존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즉, 이것은 전문적으로 말해서 기록의 물리적 관리와 지적 통제(intellectual control)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강령 제1조에서 제시했듯이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무결성(불변성)과 진본성(authenticity)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물의 진본성이란 기록물이 원래 가진 생산 맥락, 내용, 구조의 특성이 시간이 가도 변경됨 없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록물이 원본이고 진본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그 특성과 내용이 변경,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본 기록물은 그 기록이 가진 원래의 신뢰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이 진본 기록물은 기록물 생산자가 원래 최종적으로 생산했던 그대로의 기록이다.”¹⁶⁾ 여기서 기록의 무결성이란 원래의 기록이 훼손함이나 변조됨이 없이 원래 상태로 보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기록 내용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보존소에서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받을 때 그 법적 효력은 소장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할 뿐이지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기록 생산의 주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는 문제는 오늘날 기록관리에서 가

16) 이상민, 「전자기록물의 관리원칙: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 제13호, 2000. 12. 132쪽.

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¹⁷⁾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물리적인 보존을 담당한다. 기록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훼손된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역사가와는 달리 기록의 물리적 보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며 보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하고 발전시킨다. 기록의 이러한 물리적 성질로 인해 보존기록은 기록물의 훼손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보존환경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기록보존에 적합한 항온항습의 보존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기록보존소이며 기록은 소수의 장소에 한데 모여져 집중 보존된다.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듯이 “아키비스트의 주임무는 그들이 소장·보호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을 훼손 없이 완전성(무결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반면에 기록을 보다 편하게 이용하려는 역사가는 원본기록의 열람을 선호하여, 기록물의 훼손을 우려하는 아키비스트의 입장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마이크로필름 등 보존 및 열람 매체가 발달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디지털 매체 전환방식으로 온라인 상으로 기록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키비스트는 보존매체의 선정 및 그 기술적 특성과 보존매체 자체의 보존 환경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종이 기록물 외에 이미지나 소리

17) 서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의 관리라는 새로운 도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1년 SAA 의장 토마스 히커슨 교수는 아키비스트가 처한 10대 도전 중의 첫 번째 것으로 “전자형태로 생산된 기록을 식별, 평가, 보관, 보존, 이용 지원을 위한 관리제도 수립”을 꼽았다. H. Thomas Hickerson, “Ten Challenges for the Archival Profession,” *American Archivists*, (64:1, Spring/Summer 2001), p.7.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국제 프로젝트인 InterPARES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추세를 보려면 Eun G. Park, “Understanding ‘Authenticity’ in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Analyzing Practitioner Constructs,” *American Archivists*, (64:2, Fall/Winter 2001), pp.270-291. 이상민, 「전자기록물의 관리원칙: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 제13호, 2000. 12. 참조.

정보를 가진 시청각 또는 멀티미디어 기록이 대량 생산되고 있고 이들 기록은 특별한 물리적 보존조건을 필요로 한다. 시청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이해는 아키비스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전문가 그룹을 요청하기도 한다. 기록물의 물리적 보존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보존기술의 발전은 유럽식 전통의 역사가-아키비스트의 개념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 있다. 여전히 역사가-아키비스트의 존재가 필요한 가운데 오늘날에는 기록관리자-아키비스트 혹은 보존가-아키비스트의 개념과 기능이 혼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키비스트 관리 지식과 기능의 변화는 기록물의 물리적 본성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아키비스트의 업무 내용 뿐 아니라 전통적인 직업관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의 지적인 통제를 확보해야만 기록이 보존되고 이용될 수 있다. ICA 윤리강령의 제2, 3, 4조는 아키비스트가 기록물을 관리원칙에 따라 정리 기술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시한다. 윤리강령은 보존기록을 “출처주의 원칙과 원생산질서 존중의 원칙과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자원이 허용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정리, 기술하여야”하며 “보존기록물을 가공, 보존, 열람 활용하는 과정 중에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호해야”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리적인 관리통제와 지적인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록보존소의 기록은 기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은 기록의 이용을 위해 기록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익히 증명된 업무 방식 (“승인된 원칙과 관행”)이 바로 출처주의, 원생산질서 존중 원칙, 계층

적 기술, 검색보조도구(finding aids)의 개발이다. 그래서 윤리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아키비스트는 전체 소장 기록물에 대해 일반 검색목록과 특정분야의 검색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지시한다. 기록의 정리·기술은 기록의 관리와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연구 지침이 된다. 이 분야의 지식과 기술은 전문 분야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역사 연구의 경험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은 기술(description)의 작성이다. 역사 연구의 경험이 있는 아키비스트는 보다 능숙하게 기록물 내용 및 구조 영역과 맥락 영역 즉, 생산기관의 연혁과 기록물의 생산관계, 주요 내용 및 기록물의 중요성 등에 관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록물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그 분야 역사 연구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기관의 조직과 기록생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존기록은 아키비스트의 업무 조직인 기록보존소가 보호할 책임(custody)을 갖고 있다. 영어로 커스터디(custody)라 함은 기록의 관리책임을 뜻한다. 행정기관은 기록의 관리와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기록보존소는 기록을 정리·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이 커스터디라는 관리책임 개념에 의해 기록보존소의 직원은 기록 이용이 요청될 때 그 기록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될 수 있게 생산하고 관리하며, 시간이 지나가도 기록의 진본성을 보존하고, 기록이 불법적으로 폐기되지 않게 보장하며, 관리 중인 기록의 관리 상태에 관해 책임 있게 설명한다. 아키비스트는 영구보존하기로 결정된 기록의 관리책임을 맡는다.¹⁸⁾

공공 기록물은 국가의 소유이고 국민의 소유이다. 그러나 기록보존소는 자신이 소유 혹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소장 기록물이라고 해도 보

18) URL: <http://naa.gov.au/recordkeeping/custody/policy.html>

호되어야 할 개인 사생활 정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의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아키비스트는 법령에 의해서나 윤리강령에 의해서 이러한 기록을 보호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죽어 있는” 기록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자. 오래 전에 죽은 남편의 전기를 쓰기 위해 미망인이 외교관이었던 남편의 인사 기록을 기록보존소에 열람 신청했다. 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은 남편의 부정한 관계가 기술된 정부기관의 조사보고서(남편의 정부의 이름과 신상에 관한 기록을 포함)를 그 미망인에게 열람시킬 것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아키비스트들은 고민 끝에 그 정부(情夫)의 신상 정보만을 삭제한 기록을 신청자에게 공개했다고 한다. 그 미망인은 과거에 있었던 남편의 부정 사실에 놀라기는커녕 그것은 옛날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웃었다고 한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아키비스트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이용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키비스트는 단지 정해진 규정과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제공할 뿐이다. 윤리강령에서 아키비스트에게 요구하는 기록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강조는 특히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특별 배려 같은 것을 배제하도록 요구한다.

아키비스트는 최대한의 기록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기록은 공개되어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비공개 기록이 빛을 보게되는 것은 연구자들의 공개 요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키비스트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공개프로그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기록보존소는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윤리강령 제6조에 “비합리적인 이용 제한을 철회

시켜야 하며, 일정한 공개 제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록물 수집 의사를 제시하거나 기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에 대한 이용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 제한 조건을 재협의해야 한다.”라고 하여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존기록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되기도 한다. 기록의 증거적 가치는 기록 생산기관의 법령 규정과 업무 경험에서 결정된다. 증거적 기록의 경우에는 기록의 검색과 사본 서비스 제공이 기록 내용이나 생산맥락의 기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록보존소가 단지 증거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의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 존재 의미가 퇴락한다. 한편 증거적 가치를 가진 기록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니는 기록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식민지시대의 지적원도나 재판기록, 행정기록이 그 사례이다.

공공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게 행정적인 참고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 준비를 한다. 저급한 단계의 공공기록보존소에서는 증빙기록과 행정기관 기록의 서비스를 중점 업무로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보존기록 이용 단계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기록보존소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기관에 그치고 만다. 기록보존소가 과중하게 행정적 서비스 업무, 예를 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전과조회라든지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확인해주는 인사기록 조회, 지적원도 열람 등의 재산권 확인 서비스 업무 등에 치중하게 되면, 역사 기록을 보존하고,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역사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보다 본질적이고 고차원적인 기록보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록보존소가 한 나라 역사와 정체성(identity)의 상징

이며 역사기록의 보고이자 미래 역사연구의 사료가 모여 있는 중심 센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파급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문화와 학문 수준에 필히 반영된다.

4. 결론 : 역사가, 기록보존소, 아키비스트의 관계와 역할

역사가는 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의 주 이용자이다. (보편적인 기록보존소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기록보존소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이자 역사가와 아키비스트가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아키비스트는 이들 역사가들에게 유용한 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게 정리하여 제공해 준다. 이 세 문장은 이 삼자간의 관계를 간결하게 나타내준다. 연구자가 없는 기록보존소와 아키비스트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 또 기록보존소나 기록을 선별 정리하는 전문 아키비스트의 역할 없이 역사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고서적상에서 구한 기록이나 남이 복사해서 편집해 놓은 자료선집에만 의존해서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연구 풍토가 아니다.

역사가는 기록보존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 기록의 수집 보존에 대해 직업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위해 올바른 기록관리를 촉구하는 운동은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책무이지만 후대의 역사가들이 사용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보존하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역사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역사가들이 역사기록의 선별 보존에 참여하는 방식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역사가들이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들은 공

공기관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국가기록관리 자문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관리 자문기구의 참여는 결국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제도의 수립에 관여하고 기여하는 일이다. 역사가의 학술단체에 기록보존분과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방식도 추진해야 한다.

역사학자는 과거에 생산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기록을 활발히 이용하여 역사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키비스트도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대로 불합리한 비공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로부터의 공개 청구가 기록물 확대 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국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일제 식민지시대의 오래된 기록을 재분류하여 전부 공개하라는 주장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의 중요 기록을 수집 제공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기관은 역사 기록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부 수립 이후 기록의 재분류 공개를 여러 방안을 통해 촉구해야 한다. 기록보존소는 통상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역사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역사학자는 대학 학부에서 기록관리학의 기초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역사 기록관리의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전문적인 기록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데 역사학자들이 공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궁극적으로 역사학 전공에는 보존기록에 관한 연구, 즉 기록학 연구가 역사학문의 하나의 분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가의 교육과 양성을 담당하는 역사학 교수는 역사기록의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록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사료 강독이나 서지학 입문 정도로 역사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없다. 기록관리대학원 과정이 이미 여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로 협동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선진국에서의 기록관리 대학원의 표준 커리큘럼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책무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록관리 대학원 과정에서는 대부분 역사 기록관리 분야, 특히 기록의 선별, 평가, 기술(내용 및 범위 분야, 생산 맥락 분야)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 훈련이 미약한 편이다.

미국의 아키비스트 트루디 피터슨씨는 역사기록 보존과 역사 연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했다.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선별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궁극적 이유는 역사 연구자에게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이 어디에서 왔고 내용이 무엇이고 기록관리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연구자에게 알려준다. 여기에는 어떠한 학술적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도 이입되지 않는다. 기록 없이 또는 기록이 이용될 수 있게 정리되지 않으면 어떠한 연구도 불가능하다... 국가는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서, 그 정부의 성장과 기능의 수행, 그리고 국가 발전에서의 역할을 나타내주는 기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기록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해준다. 기록 없이, 역사 없이는 단지 서로 상관없다는 의식만이 지배하게 된다.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한 나라의 기록은 다른 나라의 활동에 빛을 비추어 준다. 어느 기록도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¹⁹⁾

피터슨씨가 함축적으로 지적한대로 공공기록보존소는 정부의 책임 행정과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역사적 기록의 보존과 역사 연구의 센터이다. 기록보존소는 과거

19) 트루디 피터슨, 「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기록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기록물관리실무자과정 교육교재』, 정부기록보존소, 2002, 14쪽.

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과거의 기록이 오늘날 이용되고 오늘날 생산되는 기록이 수집 정리되어 미래에 사용되어 지기를 기다리는 곳이다. 따라서 기록보존소의 존재와 체제는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행정효과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성과로 나타나는 문화적 역량의 발현 결과이다. 한 나라의 역사기록이 갑자기 증가하고 역사 연구가 갑자기 팽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역사적 연구를 위한 기록열람이 미미한 것은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록이 부족하거나, 기록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검색보조도구가 미비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이나마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기록보존소와 아키비스트 역사학자 삼자간의 역할과 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못하다.

전문기록관리기관인 국가기록보존소는 그 나라의 중요한 역사기록을 선별·수집·보존·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록관리체제로서의 국가기록보존소는 이러한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인적, 물리적 기반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 국가기록보존소가 이러한 체제를 제대로 갖추기 전의 단계에 있다면, 기록보존소 내부의 아키비스트나 정부 내부의 행정관리들만의 힘으로 이러한 체제를 자력으로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역사 기록보존에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역사학자 그룹과 투명한 책임행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시민기구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국립기록보존소의 창립자는 역사학자들이었다. 미국역사학회(AHA) 총무를 30년간 역임한 플랭클린 제임슨은 “국립기록보존소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제임슨은 1904년 미국 최초로 『미국정부 기록보존소 가이드』를 발간하여 국가 기록의 존재를 역사학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기록보존소의 설립 필요성을 전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

기록관리법을 제정할 때 역사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계의 원로 교수들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법령 제정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정부기록보존소가 1969년 설립되었을 때의 과정은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에서의 국가기록보존소는 정리되지 않은 채 해마다 늘어가 는 공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문서보관소”로 출발했다. 이것은 당시 총무처의 문서관리 행정의 일환으로 구상되었으며, 국가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말단 행정 처리 부서로서 설립되었다. 폐기대상이 될 기록을 폐지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문서보관소” 설립 기금으로 한다는 구상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1962년부터 “국립문서보존소”의 설립이 구상되고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가 총무처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을 때 역사학계나 문화계 인사의 지원이나 관심이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기록보존소의 이러한 출발은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국가기록유산의 중심 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록문화의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지도 못했고 수행하지도 못했다.

기록보존소 내부적으로도 체제 정립 초기에는 역사학자-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대공황-뉴딜 시기 국가기록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는데 정치적 압력과 연줄에 의한 채용 압력이 거셌지만, 미국역사학회의 추천으로 초대 국립기록보존소장이 된 로버트 코너 교수는 대학의 역사교수들이 추천한 역사학자들만 국립기록보존소에 고용했다. 1930년대 중반 국립기록보존소에 취직했던 역사학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아키비스트로 훈련시켜야만 했다. 영국의 기록관리 경험을 정리한 힐러리 젠킨슨의 『기록관리매뉴얼』이 기록관리의 원칙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였던 시기를 거쳐, 미국의 아키비스트들은 미국의 현실에 맞는 기록관리 이론과 실무

지침을 개발했다. 로버트 코너 소장이 직접 고용한 역사학 박사 쉘렌버그는 미국 기록관리체제의 이론적 선구자가 되었다. 이들 역사학자들은 미국에서 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²⁰⁾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립기록보존소의 위상이 청급이 되어야 하고 기관장이 차관급이어야 한다는 행정적 위상의 논의보다는 국가의 기록보존소가 단순한 행정서비스 기관의 위치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연구·교육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앞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체적으로 쌓아올린 역사 연구의 축적과 문화적 권위, 그리고 기록보존에 관한 광범위한 국민적 인식과 뿌리깊은 존중이 진정한 국가기록보존기관의 위상을 세워준다고 생각한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관의 위계적 위상보다는 전문관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내용적 권위가 확보되도록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방직 신설을 통한 공직사회 문화의 개방과 공직 전문화 추세로 보아 정부기록보존소의 전문화와 독립성 획득 방향으로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문기관의 행정적 기관장의 임기를 장기화하는 정책도 발전적 변화이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록보존소 내부의 전문가 그룹인 역사학자 - 아키비스트의 다대한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기록관리기관 외부의 문화계와 역사학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작업도 필요하다. 물론 아키비스트는 그러한 외부 지원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칙에 맞는 기록물 정리와 검색보조도구의 개발로 역사 연구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록 이용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20) Mattie U. Russell, "The Influence of Historians on the Archival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rchivists* (46:3, Summer 1983) pp.279-282. 2000년대에도 국립기록관리청 핵심부서인 기록관리서비스국의 국장과 6개 과장급 간부 중 5명이 역사학 박사이다.

미래의 중요 역사 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가와 아키비스트는 서로 합심해서 영구 보존해야 할 공공기록이 잘 선별되고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기록보존기관 안에서 역사가-아키비스트들이 주도하여 보존기록 선별 체제를 수립하고 기록보존소와 자료관에서의 역사적 가치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업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소장 기록의 목록이 미비하거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기록을 거의 활용할 수 없을 때 역사가와 아키비스트는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작 기록이 필요한 사람들은 역사가들이다. 역사가가 기록보존소에 와서 목록을 작성한다든지 기록의 검색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것은 기록보존소의 관리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키비스트와 행정관리 부분이 공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아키비스트는 외국 소재 기록을 포함한 대규모의 체계적 기록수집을 통해 연구자의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서 역사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자원이 중복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이용자 연구(user study)를 통해 어떤 역사가들이 어떤 기록을 주로 이용하는지 연구함은 물론 연구의 어느 시점에 왜, 어떻게, 어디서, 그런 기록을 찾는지 조사해야 한다. 기록 이용자로서의 역사가를 이해하고 보다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그 외 여러 질문이 중요하다. 역사가들에게 “연구”란 무엇인가? 그 연구가 1차 자료의 조사와 2차 자료의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가? 연구의 동기는 무엇인가? 당대의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는가? 어떤 요소들이 역사 연구자의 자료 찾기 작업의 성격이나 집중성에 영향을 주는가? 역사가들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사용하는 패턴은 무엇인가? 그 사용 패턴이 역사가의 이념, 주장, 가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어느 시점에 원사료 기록 조사연구를 시작하

고 어느 시점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마치는가? 최근 미국에서의 역사 연구 동향을 보면 역사 연구의 주제가 바뀔 때 기록정보를 찾는 패턴도 달라진다고 한다. 역사가들은 대체로 아키비스트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에 관한 기록을 이용하게 해 주었지만 기록조사 연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동시에 그들은 기록보존소 안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열람이용 시스템과 문서화전략, 그리고 전문가와의 면담 필요성을 지적했다.²¹⁾

아키비스트들은 역사학계의 연구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장 기록물을 제대로 정리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통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한 기록물 검색은 역사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편리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다. 한 나라의 국가기록보존소인 정부기록보존소에 주요 소장 기록물인 정부수립 이후 기록물에 대해 제대로 된 검색보조도구(finding aids)가 없다는 것은 매우 창피한 노릇이다. 기록물의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전 단계의 작업이 바로 필요한 기록물 목록을 통해 찾는 일이다. 호주의 경우엔 전국 7개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전체 기록물의 목록을 인터넷으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정부기록보존소도 미래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록관리자와 아키비스트로서의 전문가 의식과 전문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인력이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역사가로서는 전문적인 열람 서비스를 요구해야 할 인적 대상인 경험 있는 아키비스트가 제대로 없는 불행한 현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기록

21) Barbara C. Orbach, "The view From the Researcher's Desk: Historians and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s*, (54:1, Winter 1991) pp.29-31, pp.40-43..

보존소에 있는 역사가 출신 직원들은 기록보존체제도 정립하고 아키비스트 전문훈련도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외국에서도 그 발전 과정에 따라 겪어야 했던 역사적 경험이다. 현재 배우면서 가르치는 수준의 기록관리대학원의 교육 과정이나마 시간이 감에 따라 정상화되어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단 역사 연구의 경험에 관한 훈련은 기록관리대학원의 교육 과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2년제 프로그램인 이상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부행정의 효율화와 민주적 책임행정의 실현 등 시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공공기록보존소와 아키비스트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 역사 기록의 선별과 보존, 그리고 전문적 연구에의 활용 준비라는 가장 근본 과제를 아직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 내의 역사학자-아키비스트들은 기록관리제도를 제대로 수립하여 중요 역사기록이 선별·수집될 수 있게 분산된 역량이나마 분투하고 있다. 아키비스트의 직업적 역할의 수행에 가장 큰 원군이 되는 것이 역사가의 참여이다. 중요 역사기록물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관심이 역사학자들에게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 결과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역사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국가적인 기록관리체제의 수립에 착안하고 역사가들이 수행할 역할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 특히 현대사가들이 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 보존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용할지 궁금하다.²²⁾ 본고

22) 대단히 좋지 않은 사례로 글을 맺게 되어 유감이다. 정부기록보존소는 2000년 11월 러시아국립기록보존소장과 관련 고위급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러 기록보존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워크샵은 러시아에 있는 한국 관련 자료의 면모와 이용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그런

에서 제시된 전문가적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전문적인 요구의 제기를 통해 역사학자와 아키비스트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본인이 제시한 전문가 이슈와 역할에 관한 논의 외에 보다 비판적인 관찰과 생산적인 협력관계 수립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데 수 천장의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역사학 교수나 문헌정보학 교수도 참가하지 않았다. 필자에게는 우리 역사 연구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작년도 포드 대통령기록관과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한국관련 역사 기록 수집을 『기록보존』(2001년)지를 통해 알리고 이용할 수 있다고 공표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 기록의 목록은 2002년 말 완성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abstract

For History : Roles of Historians and Archivists - Public Archives, Archivists, and Historians -

Lee, Sang-min

Chief Consultant Archivist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Relationship of Historical Studies and Archives
3. Relationship of Archives and Archivists
4. Conclusion; Historians, Archives, and Archivists, and Their Roles

This essay is mainly written for historians who may have “little or limited experience” in dealing with archives and archivists in their course of historical research. It may sound very ridiculous to say that “historians have little or limited experience” in using archives but it is also true that many Korean historians have depended on various compiled editions of historical materials or personally donated and/or collected materials when they do research, rather than they would visit archives and search for the materials by themselves.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at the public archives in Korea have not served historians well and effectively, and vice versa, that historians have not visited archives sometime with no knowledge of archives, and have not requested opening of archives for their research.

It is a simple fact that historian's study depends on the records he/she uses. Without records, there should be no history. Use of archives for historical research is a common thing and a must in modern archives. Records are selected to be preserved in archives for their preservation as well as their future use. Who select the records as archives? Archivists do mostly. Then, what are the criteria for the archivists to chose records as permanent preservable archives? Answers to this fundamental question have been provided by many historians and archivists. The closest answer may be that selecting archivists would be better trained and equipped with historical research and knowledgeable of the major trends in historical research. With his/her own experience of historical research and tracing the trends of historical studies and materials used in the historiography, they could chose better and appropriate records for future use using their prudence and discretion. It also means that historians have had influence on archivists in their selecting archives by providing the theme and context of historical studies of the time.

Though not necessarily becoming a historian themselves, selecting or appraising archivists should understand the process of creating the records and should know how they become archives. This is a precondition to become a good archivist. But that's not all. They must know how the archives are used and what archives are used for what purposes. Among many other roles of modern archivists, selecting and describing the archives are the foremost tasks of an archivist. Archivists therefore developed modern methods to select future archives based on functional analysis and records series concept rather than a record file or item as a unit of selection.

Historians are users or consumers of the archives held in the

archives building or repository. The quality of their study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materials they use. With the help of archivists not to mention of reference service, historians owe much to archivists in having an access to the materials they need, intellectually and physically. Too many closed archives and too long closed archives in the archives repository would benefit neither historians nor archivists. However, archivists can mostly react only to active requests and demands made by historians for more wide accessibility. Using the FOIA, as in the U.S., or the Information Opening Act, as in case of Korea, historians can promote the use of historical materials as well as promot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the benefit to the society as a whole. In this context, it is very desirable to establish a close professional relationship between historians and archivists even in the age of information society. At present, historians need more understanding of operation and importance of archives while archives administration need to realize the potential archival demands from research community and civil movement for clean government.